



충청북도
www.cb21.net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도보

선	기관의 장
람	

제2392호 2006년 2월 3일 (금)

조 례

- 충청북도조례 제2905호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3
 충청북도조례 제2906호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 8
 충청북도조례 제2907호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
 조례..... 18

훈 령

- 충청북도훈령 제1200호 충청북도도보규정전부개정규정..... 21

고 시

- 충청북도고시 제2006-13호 진천덕산·음성맹동일부지역개발행위허가제한
 정정고시..... 26
 충청북도고시 제2006-14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고시..... 27
 충청북도고시 제2006-15호 음성금석지구택지개발사업사업시행자변경고시·28

공 고

- 충청북도공고 제2006-51호 2006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시행계획· 29

회									
람									

지방행정

△ 고 시

청주시고시 제2006-11호 도시계획시설(학교:충북대학교)사업실시계획인가
정정고시..... 31

진천군고시 제2006-6호 진천백곡군관리계획변경결정조서정정고시..... 40

음성군고시 제2006-10호 도시계획시설(배수시설)사업시행자지정고시..... 41

음성군고시 제2006-11호 도시계획시설(배수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42

△ 공 고

청주시공고 제2006-100호 등록공인공고..... 43

청원군공고 제2006-76호 공인의등록및폐기사항공고..... 44

기 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24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의고시..... 4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6-11호 도로사용개시(폐지)에관한공고..... 46

조 례

◎ 충청북도조례 제2905호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와 충청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충청북도립학교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6년 2월 3일
충청북도교육감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를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로 한다.

제1조중 “교육기본법”을 “「교육기본법」”으로 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의림공업고등학교”를 “제천산업고등학교”로, “영동농공고
등학교”를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로 한다

별표 3중 수안보중학교 위치란중 “상모면”을 “수안보면”으로 하고, 오창중학교란 다
음에 각리중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각리중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각리 637-4번지
-------	-------------------------

별표 4의 수안보초등학교, 수희초등학교의 위치란중 “상모면”을 “수안보면”으로 하고,
충주용산초등학교란 다음에 금능초등학교란을, 각리초등학교란 다음에 비봉초등학교 란
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금능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금능동 31번지
비봉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구룡리 395번지

별표 6의 수안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수회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위치란중 “상모면”을 “수안보면”으로 하고, 주중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울량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울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울량동 1034번지
--------------	-------------------------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중 각리중학교 및 별표 4중 비봉초등학교는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1]

고등학교

현행		개정안	
명칭	위치	명칭	위치
의림공업고등학교	(생략)	제천산업고등학교	(현행과 같음)
영동농공고등학교	(생략)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현행과 같음)

[별표 3]

중학교

현행		개정안	
명칭	위치	명칭	위치
수안보중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삼모면 은천리 51번지	수안보면.....
오창중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창리 151-4번지
< 신 설 >	각리중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각리 637-4번지

[별표 4]

초등학교

현행		개정안	
명칭	위치	명칭	위치
수안보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삼모면 안보리 598번지	수안보면.....
수희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삼모면 수희리 672번지	수안보면.....
충주용산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용산동 1671번지
< 신 설 >	금능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금능동 31번지
각리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각리 112-1번지
< 신 설 >	비봉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구룡리 355번지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2006학년도 병설유치원 및 초·중학교 신설과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 및 학과 개편으로 학교 명칭을 변경하고,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충주시 지역 학교의 주소 변경을 위해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2006학년도 병설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2개교 및 중학교 1개교 신설
(별표 3·별표 4 및 별표 6)
- 나.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 및 학과 개편에 따른 교명변경(별표 1)
- 다.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충주시 지역 5개 학교의 주소를 변경함(별표 3·별표 4 및 별표 6)

◎ 충청북도조례 제2906호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와 충청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6년 2월 3일
충청북도교육감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4조의 제목중 “공휴일 근무”를 “공휴일 등 근무”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를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로,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공휴일”을 각각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교육감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중 “교육감”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제1항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공무원증 규칙(행정자치부령)”을 “「공무원증 규칙(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호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동조제6호중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동조제7호중 “공무원교육훈련법시

행령"을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2조제5항중 "한국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령」"으로, 동조제6항제1호중 "상훈법"을 "「상훈법」"으로, 동항제2호중 "정부표창 규정"을 "「정부표창 규정」"으로, 동항제3호중 "모범공무원 규정"을 "「모범공무원 규정」"으로 한다.

제27조중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관한 각급학교 공무원의 특례) 각급학교 공무원에 대하여는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관한 제22조제3항, 제6항 내지 제8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2]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7
출산	배우자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비 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2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p> <p>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p>	<p>제12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p>
<p>제1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 ①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p>	<p>제14조(-----공휴일 등 근무) ①-----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p> <p>-----토요일 또는 공휴일-----</p> <p>②-----토요일 또는 공휴일-----</p> <p>-----토요일 또는 공휴일-----</p>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교육감은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교육감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토요일휴무제) ①교육감은 토요일에 공무원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삭 제)

제18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교육감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신설)

제18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소속기관의 장

②~⑤ (현행과 같음)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특별휴가) ①~② (생략)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④~⑤ (생략)

⑥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 1.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을 받은 때
- 2. 정부포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 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 4.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⑦ 교육감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에 한하여 10일간 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⑧ 법 제66조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2조(특별휴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전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p>⑨ (생략)</p>	<p>⑨ (현행과 같음)</p>
<p>제23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23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p>

[별표 2]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현행			개정안		
구분	대상	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7	결혼	-----	7
	자녀	1		(삭제)	(삭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삭제)	(삭제)
회갑	본인 및 배우자	5	회갑	(삭제)	(삭제)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삭제)	(삭제)
출산	배우자	3	출산	-----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사망	-----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삭제)	(삭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삭제)	(삭제)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탈상	(삭제)	(삭제)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1		(삭제)	(삭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삭제)	(삭제)

비 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를 축소 조정하며, 주민들에 대한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의 복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제12조)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공휴일에 토요일 포함(제14조)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토요일 휴무제 폐지(제15조의2)

라. 연가일수의 탄력적 운용(제18조제6항)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시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마. 특별휴가 일수 축소 조정(제22조제1항 별표 2)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함.

바. 각급학교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적용 시기 조정(부칙 제3항)

학교근무 직원의 특별휴가에 대하여는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 주40시간 근무제에 관한 특별휴가 규정의 개정과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 함

◎ 충청북도조례 제2907호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와 충청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6년 2월 3일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2,985명”을 “3,008명”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2,972명”을 “2,995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원의 총수) 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2,985명</u>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 <u>2,972명</u></p>	<p>제2조(정원의 총수)<u>3,008명</u> </p> <p>1. (현행과 같음)</p> <p>2. <u>2,995명</u></p>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이 재산정 고시(교육 인적자원부 지방교육혁신과-2206, 2005. 12. 21)됨에 따라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985명에서 23명이 증원된 3,008명으로 함(제2조)

- 정원의 총수 : 2,985명 ⇒ 3,008명(증 23명)

·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 변동없음

·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소속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2,972명⇒2,995명(증 23명)

훈 령

◎ 충청북도훈령 제1200호

충청북도도보규정전부개정규정

충청북도 도보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6년 2월 3일
충청북도지사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에서 발행하는 충청북도 도보(이하 "도보"라 한다)의 편찬, 보급, 기타 도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관장) 도보의 편찬, 보급, 기타 도보에 관한 사무는 공보관이 관장한다.

제3조(규격) ①도보의 규격은 가로 190밀리미터, 세로 260밀리미터로 한다.

②도보의 표지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속지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발행일) 도보의 발행주기는 주간으로 하되 매주 금요일을 발행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5조(발행형태) 도보는 인쇄물의 형태로 발행하되 전자적 형태 (이하 “전자도보”라 한다)로 전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6조(편집구분과 순서) 도보의 편집구분과 순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조례
2. 규칙
3. 훈령
4. 예규
5. 고시
6. 공고
7. 인사 : 도 소속 공무원의 인사발령 사항중 필요한 사항
8. 상훈 : 공무원 및 도민에 대한 포상
9. 공보 및 광고 : 제1호 내지 제8호에 속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도민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10. 시·군행정 : 법령에서 도보에 게재토록 규정된 시·군의 고시, 공고 등
11. 기타 : 도보에 게재를 요하는 타기관에서의 게재의뢰 사항

제7조(게재의뢰 등) ①도보게재 의뢰는 도의 경우에는 관련 실·과장이 시·군, 기타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기관·단체의 장이 한다.

②도보게재 의뢰는 게재할 원고를 첨부하여 매주 화요일까지 공보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③공보관은 제5조의 제7호 내지 제11호의 게재의뢰 사항중 도

보의 발행목적에 반하거나, 도보의 신속한 발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보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제8조(배부기준) 도보는 도의 관련 실·과, 시·군, 그밖에 필요한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수량은 이용도 등을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

제9조(보존 및 비치) ①도보의 보존 및 비치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도보를 배부 받은 부서 또는 기관·단체에서는 민원실 등 주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도보의 공문대체) 도보(전자도보를 포함한다)에 게재한 사항중 다음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1. 자치법규의 공포
2. 훈령·예규의 발령
3. 기타 도보에 공문대체의 뜻을 기재하여 게재한 사항

제11조(도보의 유상보급) ①도보의 보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대행인을 지정하여 일반에게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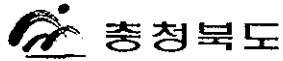
②유상 보급가격은 충청북도에 납품하는 가격에 10%를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판매대행인의 지정, 유상보급가격의 결정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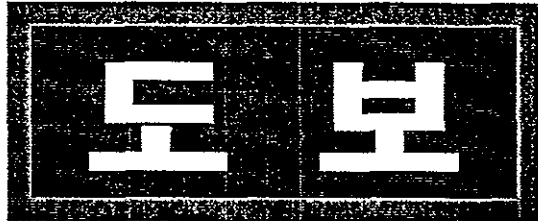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http://digital.cb21.net



선 람	기관(부서)의 장

제 호 년 월 일(요일)

조 례

규 칙

훈 령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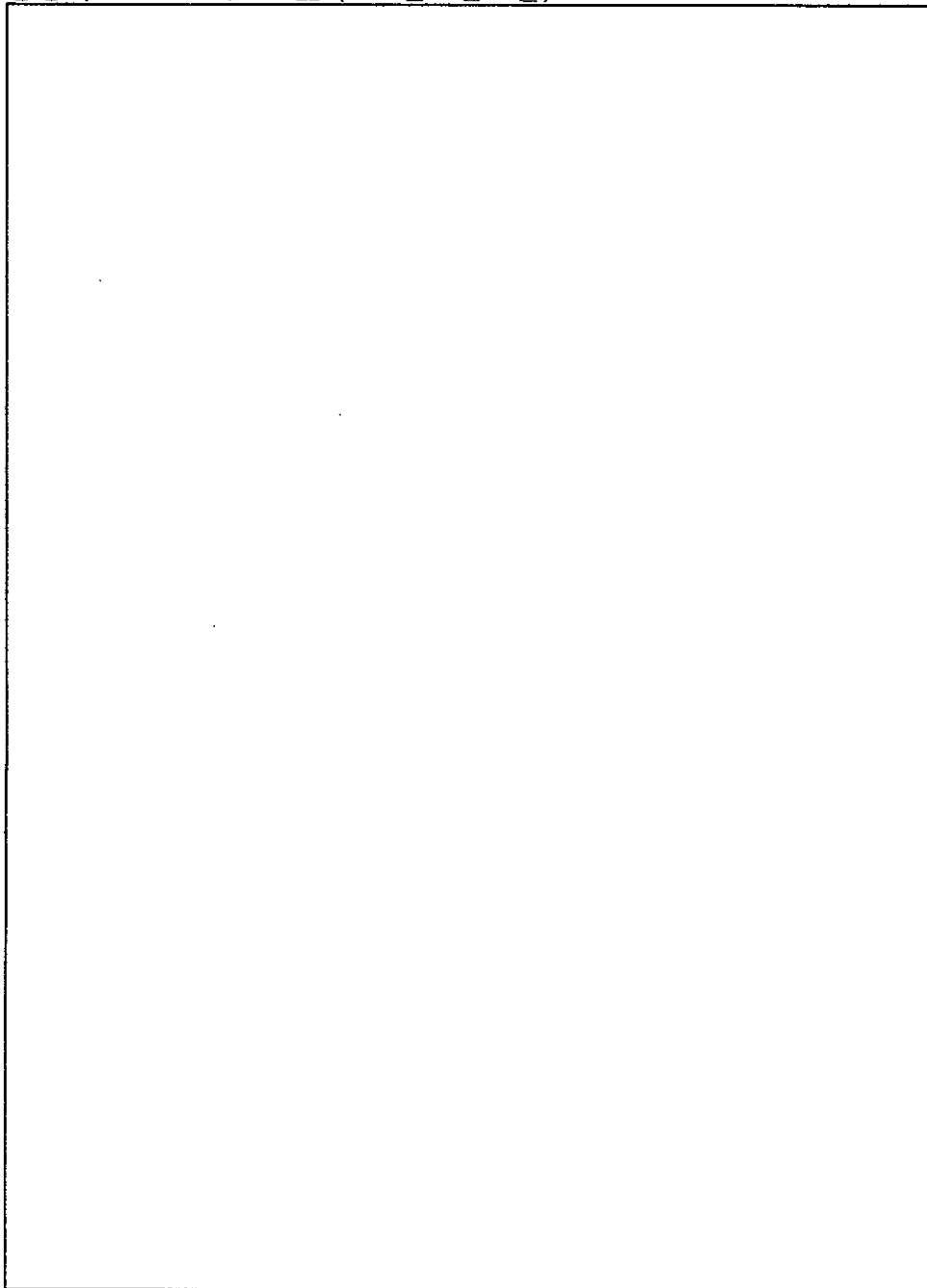
회 람									
--------	--	--	--	--	--	--	--	--	--

발행 : 충청북도 / 편집 : 공보관실 (☎220-2055, ☎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번지) 충청북도 도보는 매주 금요일에 발행되며, 원고마감은 매주 화요일까지입니다.

190×260 신문용지 50g/m

[별표 2]

충청북도도보 제 호 (년 월 일)



고 시

◎ 충청북도고시 제2006-13호

진천덕산·음성맹동일부지역개발행위허가제한정정고시

진천덕산·음성맹동 일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한하고, 같은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월1일 충청북도고시 제2005-200호로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6년 2월 3일
충청북도지사

1. 정정내용

당초 개발행위허가 제한면적 : 9.0 km²(272만평)

정정 개발행위허가 제한면적 : 9.09km²(275만평)

2. 정정사유 : 면적 오기

◎ 충청북도고시 제2006-14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고시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업을 신규로 등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6년 2월 3일
충청북도지사

등록업체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업종
상호	영업소재지				
성진전력(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066번지	이승익	제2006-4호	2006. 1. 25.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 충청북도고시 제2006-15호

음성금석지구택지개발사업사업시행자변경고시

충청북도 고시 제2003-108호(2003.8.22), 충청북도 고시 제2005-146호(2005.11.4) 호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된 음성 금석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자를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2월 3일
충청북도지사

□ 변경내용

구분	지구명	위치	면적(m ²)	사업시행자	변경지정일자
기정	음성 금석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일원	180,822	음성군수	-
변경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대한주택공사 사장	도보 고시일

공 고

◎ 충청북도공고 제2006-51호

2006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시행계획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3일
충청북도지사

1. 사업기간 : 2006년 6월 ~ 2006년 12월

- ※ '06년도에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5. 31)가 실시되는 것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함
- ※ '06년도 선정결과 발표 : '06. 6. 1(목)

2. 총사업비 : 232,000,000원(전액국비)

3. 신청자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4. 지원사업

- 대 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사회적 공중이익의 사업으로 다른 보조금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
- 사업수 : 1단체 1개사업 (유형명이 아닌 구체적 단위사업)
- 사업비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당해사업의 실비적 경비로 지원액은 "8항"의 기준에 의거 위원회 심의 결정
- 유 형

- ① 사회통합과 평화 (예시 : 공동체의식함양, 갈등해소, 평화운동 등)
- ② 문화시민사회 구축 (예시 : 친절·질서·청결운동, 생활개혁, 선진문화의식, 투명사회 구축 등)
- ③ 자원봉사·NGO활동기반확대 (예시 : 자원봉사자교육·관리,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민·관파트너십 조성, 주민자치참여 등)
- ④ 안전문화·재해재난 극복(예시 :재해·재난예방활동, 안전문화 교육·훈련·홍보,재난구조 등)
- ⑤ 소외계층 인권신장 (예시 : 장애인·노인·불우 청소년 등의 인권신장 및 지원 등)
- ⑥ 자원절약·환경보전 (예시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숨은자원 모으기, 자연사랑운동 등)
- ⑦ 국제교류협력 (예시 : 국제교류협력, 해외 자원봉사·의료·구호활동 등)

- ※ 7개 사업유형 중 「단년도사업」 과 「계속(다년도)사업」 으로 구분 신청하여야 함
- ※ 계속(다년도)사업이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며,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 부

- 기간 : 2006. 2. 1(수) ~ 2006. 3. 31(금)

- 장소 : 도 자치행정과 민간협력담당
 - ※ 신청서류는 충청도청 홈페이지(www.cb21.net → 실국홈페이지 → 자치행정국 → 도정자료)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접수
 - 기간 : 2006. 3. 2(목)~ 2006. 3. 31(금)
 - ※ 직접 또는 등기우편 (2006. 3. 31 근무시간내 도착분까지 유효)제출
 - 장소 : 도 자치행정과 민간협력담당
- 6.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단체 자기소개서, 지원사업계획서
- 7. 사업 설명회
 - 일 시 : 2006. 2. 24(금) 14:00
 - 장 소 : 충청북도 대회의실
 - 설명내용 : 사업유형,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회계처리기준, 사업집행지침 등
- 8. 심사 및 선정사업 통보
 - 심사·선정 : 충청북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선정 및 시민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신청단체 중 선정단체가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계획임.
 - ※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시군 및 타 부서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 ※ 동일단체, 동일사업으로 3년을 초과하여 선정된 사업은 심사제외('06년도 부터 적용하되, '05년도까지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음)
 - 기 준 : 책임성 및 전문성,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개발성, 사업의 독창성,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사업의 실행가능성, 파급효과,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자체부담율의 적정성, 전년도 평가결과 등
 - 결과통보 : 도 홈페이지, 선정단체별 개별 통지
- 9.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차, 2차로 나누어 보조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기를 고려하여 1차에 전액지급이 필요할 경우 일시 지급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실시 (시기는 따로 알려드리며, 필요시 현지조사 병행)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정산서식 추후통보)
- 10. 기 타
 - 사업계획서의 허위 사실 기재·이중 신청,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라도 등록조건 변경 등으로 등록이 취소될 경우 보조금 환수
 - 기타사항은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전화 (043) 220- 2535, FAX(043) 220-2539] 에 문의

지방행정

◎ 청주시고시 제2006-11호

도시계획시설(학교:충북대학교)사업실시계획인가정정고시

청주시고시 제2004-111호(2004. 11. 19)로 기고시된 청주 도시계획시설(학교 : 충북대학교)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토지 세목을 정정고시 합니다.

2006년 2월 3일
청 주 시 장

- 토지세목 정정고시 내용
- 붙임 참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토지소재지 번	토지소유자			2004.11 기점 (기고시)			변경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목 (㎡)	지적 면적 (㎡)	주소	성명	용도	구조	면적(㎡)	건축및지장물	구조		면적(㎡)	주소	성명	
1	개신 252-1	학교	208	208	기소지 불명	김소시							없음	
2	개신 131	대지	2,869	2,869	장주시 흥덕구 개신동 131-3	박기섭	주택	기외/벽	85.62㎡	주택	기외/벽	85.62㎡	장주시 흥덕구 개신동 131-3 남양희	없음
							문테이너					26.88㎡	장주시 흥덕구 개신동 131-3 남양희	없음
							가게					10㎡	장주시 흥덕구 개신동 131-3 남양희	없음
							주택					80.99㎡		없음
												59.50㎡		없음
												29.97㎡		없음
												36㎡		없음
												5.4㎡		없음
3	개신 254-2	대지	344	344	장주시 흥덕구 북대동 254-2	정형자	수목	평나무		수목	평나무	2주		없음
												/r=30cm		없음

번	토지소재지		토지소유자		2004.11 기경 (기고시)		단경		소유권 이외의 권											
	호	지번	지적 (㎡)	반입면적 (㎡)	주소	성	용도	구조		면적(㎡)	건축면적(㎡)	용도	구조	면적(㎡)	건축면적(㎡)	용도	구조	면적(㎡)		
4	개신 257-2	대지	1,001	1,001	창주시 용덕구 개신동 257-2	박용섭	주택	기외/벽	106.45㎡ (32.2평)	창주시 용덕구 개신동 257-2	박용섭	주택	기외/벽	106.45㎡	창주시 용덕구 개신동 257-2	박용섭	주택	기외/벽	106.45㎡	없음
5	개신 263-1	대지	509	441	창주시 용덕구 개신동 52-2	박용섭	주택	기외/벽	22.4㎡	창주시 용덕구 개신동 257-2	박용섭	주택	기외/벽	22.4㎡	창주시 용덕구 개신동 257-2	박용섭	주택	기외/벽	22.4㎡	없음
6	개신 287-1	대지	655	655	창주시 용덕구 개신동 287-1	박준섭	농가(화원)	조립식	168.99㎡ (51.12평)	창주시 용덕구 개신동 257-2	신창표	상가(화원)	조립식	169㎡	창주시 용덕구 개신동 257-2	신창표	상가(화원)	조립식	169㎡	없음
7	개신 463-1	대지	923	923	창주시 용덕구 개신동 463-1	인병섭	주택	조각조/기외	94㎡	창주시 용덕구 개신동 257-2	인병섭	주택	조각조/기외	94㎡	창주시 용덕구 개신동 257-2	인병섭	주택	조각조/기외	94㎡	없음

번 호	토지소재지 동 지번	지역 (㎡)	지적 (㎡)	면적 (㎡)	주소	토지소유자 성 명	2004.11 기점 (기고시)				소유권 이외의 권 리	
							건물및지장물 용도	구조	면적(㎡)	주 소		건물및지장물 소유주 성명
	개신 463-1 대지						점포	조립식	129㎡			없음
							창고	컨테이너	18㎡			없음
							기주	파이프조	48㎡			없음
							대문	철재	2식			없음
							창고	조립식	14㎡			없음
							정화조		1식			없음
							회중실	조각조/기외	2㎡			없음
							비덕포장	콘크리트	161㎡			없음
							간판		1식			없음
							양장	조립식,양철	44.1m			없음
							창고 및 작업장	파이프조 철막지붕	40㎡			없음
							계사	목조 슬라이트	2식			없음
							석재		1식			없음

번	토지소재지		토지소유자		2004.11 기정 (기고시)				변경		소유권 이외의 권리				
	동	지번	지역	지적 면적 (㎡)	주소	성명	종도	구조	면적(㎡)	종도		구조	면적(㎡)	주소	성명
		개신 463-1	대지									비닐하우스			없음
8	개신 132-1	전	932	932	창원 시주 개신 258	박기범									없음
9	개신 102-2	전	5,593	1,925	창주시 흥덕구 개신동 70-12	오병선						지주대 목재		1식	없음
10	개신 287-2	전	3,544	1,463	창주시 흥덕구 개신동 287-1	박준섭						계단		1	없음
11	개신 252-2	전	79	79	기소지 불명	김소사						수도		1	없음
12	개신 463-2	전	970	646	창주시 흥덕구 개신동 463-1	민병성						가로등		1	없음
13	개신 100	임야	885	885	창주시 흥덕구 개신동 99-1	손재현						두층 배나 우. 복층아		1식	없음
14	개신 100-1	임야	1,674	1,674	창주시 흥덕구 개신동 99-1	손영관						비닐하우스		48㎡	없음

번 호	토지소재지		토지소유지		2004.11 기정 (기교시)				변경		소유권 이입의 권 리	
	지번	지목 (㎡)	지적 (㎡)	면적 (㎡)	주 소	성 영	용 도	구 조	면 적(㎡)	주 소		성 영
	개신 100-1	임야										없음
15	개신 101	임야	3,064	1,822	서울시 강서구 용산동 655-27현대(A)101- 807	인병길						없음
16	개신 138-2	임야	2,479	2,479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138-2	박홍섭						없음
17	개신 150-5	임야	1,095	1,095	청주시 상당구 사직동 135-9	정호진						없음
18	개신 산11-2	임야	1,269	1,269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280-13	정인택						없음
					서울 금천구 시흥동 산112-5 현대(A)112	정복용						없음
					안양시 민인구 인양동 154-4대아(A)B동101	정복용						없음
					서울 금천구 시흥동 927-23	정금용						없음

번	토지소재지		토지소유자		2004.11 기점 (기고사)				변경		소유권 이외의 권	
	동	지번	지적 (㎡)	면적 (㎡)	주소	성	용도	구조	면적(㎡)	주 소		성
19	개신	신11-2 일아	419	419	충주시 흥덕구 신장동 143-8	정태인	농림유휴지	농림유휴지	18m	농림유휴지	농림유휴지	없음
20	개신	신43-2 일아	1,388	1,310	충주시 흥덕구 개신동 52-2	박경선	농림유휴지	농림유휴지	17기	농림유휴지	농림유휴지	없음
21	개신	신53-1 일아	397	394	충주시 흥덕구 개신동 52-2	박영섭	농림유휴지	농림유휴지	4주	농림유휴지	농림유휴지	없음
22	개신	신54-1 일아	893	893	충남 연기군 조치원 명동 42	윤인용	농림유휴지	농림유휴지	2개소	농림유휴지	농림유휴지	없음
23	개신	신55-1 일아	268	268	충주시 흥덕구 분평동 김백사	김백사	농림유휴지	농림유휴지	4주	농림유휴지	농림유휴지	없음
24	개신	신55-2 도로	216	108	충주시 흥덕구 개신동 70-12	박정섭	농림유휴지	농림유휴지	4주	농림유휴지	농림유휴지	없음
25	개신	신55-3 도로	216	108	충주시 흥덕구 개신동 70-12	고영화	농림유휴지	농림유휴지	26주	농림유휴지	농림유휴지	없음

토지소재지 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주소	토지소유자		2004.11 기정 (기고시)		변경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성명	용도	구조	면적(㎡)	용도		구조	면적(㎡)	
25	개신 188-2	도로	112	112	경주시 상영구 남주동 527	관태하	관태하	주소	주소	용도	구조	면적(㎡)	주소	성명	있음
26	개신 258-2	도로	23	23	경주시 흥덕구 개신동 280	박일섭	박일섭	주소	주소	용도	구조	면적(㎡)	주소	성명	있음
27	개신 285-2	도로	127	5	정원군 가덕면 국전리 361	황만용	황만용	주소	주소	용도	구조	면적(㎡)	주소	성명	있음
28	개신 458-2	담	847	475	경주시 상영구 사직동 238-10	신창표씨 홍우영안 공피중중	신창표씨 홍우영안 공피중중	주소	주소	용도	구조	면적(㎡)	주소	성명	있음
29	복대 677	전	149	149	정원군 남이면 죽장리 161	이종철외 1인	이종철외 1인	주소	주소	용도	구조	면적(㎡)	주소	성명	있음
30	복대 717	전	38	38	거소지 불영	서익근	서익근	주소	주소	용도	구조	면적(㎡)	주소	성명	있음
31	복대 718	전	1,428	1,428	경주시 흥덕구 개신동 246	복영기	복영기	주소	주소	용도	구조	면적(㎡)	주소	성명	있음

◎ 진천군고시 제2006-6호

진천백곡군관리계획변경결정조서정정고시

2006년 1월 20일 진천군 고시 제2006-1호로 고시된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산29-1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용도지역변경 결정조서 정정 고시 합니다.

2006년 2월 3일
진 천 군 수

■ 정정고시 내용

- 기재착오 정정 후 용도지역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정정사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999,778	-	999,778	100.0	용도지역결정조서의 기재착오
관 리 소 계	999,778	감 17,970	981,808	100.0	
보전 관리 지역	-	-	-	-	
생산 관리 지역	-	-	-	-	
계획 관리 지역	999,778	감 21,431	978,347	100.0	
관리지역 미세분	-	증 3,461	3,461	-	
농림지역	-	증 17,970	17,970	-	

◎ 음성군고시 제2006-10호

도시계획시설(배수시설)사업시행자지정고시

음성군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시설:배수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06년 2월 3일

음 성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북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 산7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시설:배수시설)사업
 - 명칭 : 보조배수지 시설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 면적 : 602㎡(시설용지 223.3㎡, 조경시설 142.7㎡, 기타 236㎡)
 - 규모 : V=40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행자 : 음성군수
 - 주 소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621-1번지
5. 실시계획인가의 신청일
 - 2005년 11월 23일

◎ 음성군고시 제2006-11호

도시계획시설(배수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음성군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시설:배수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06년 2월 3일
음 성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북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 산 7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시설:배수시설)사업
 - 명칭 : 원남 보조배수지 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 면적 : 602㎡(시설용지 223.3㎡, 조경시설 142.7㎡, 기타 236㎡)
 - 규모 : V=400㎡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시행자 : 음성군수
 - 주 소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621-1번지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06.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소재지, 지번과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불입과 같음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신청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원남면 상당리	산74	임	67,338	602	광주반씨행치휘윤림공 문중	해당없음

※ 시행청에 귀속될 토지조서 : 해당없음

※ 관계서류는 음성군청 지역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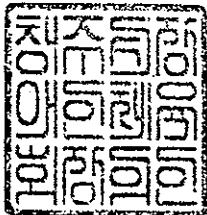
◎ 청주시공고 제2006-100호

등록공인공고

청주시공인조례제6조에 의거 등록된 공인을 청주시공인조례제10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3일
청 주 시 장

- 1. 최초사용일자 : 2006. 2. 3.
- 2. 등록사유 : 신설
- 3. 등록공인명 및 인영내역

등록공인명	인 영
청주시장애인체육회장의인	

◎ 청원군공고 제2006-76호





공인의등록및폐기사항공고

청원군공인조례 제9조(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제17조(공인의 폐기)의 규정에 의거 등록·폐기한 공인을 동 조례 제10조(공고)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3일
청 원 군 수

1. 등록공인의 최초사용일 : 2006. 2. 1 .
2. 등록 및 폐기사유 : 마모 및 인증기 교체

○신조(폐기)공인명 및 인영

신조공인명			폐기공인명		
공 인 명	글씨및규격	인 영	공 인 명	글씨및규격	인 영
청원군체육 회장의인	한글전서체 정방형 (2.4cm×2.4cm)		청원군체육 회장의인	한글전서체 정방형 (2.0cm×2.0cm)	
민원사무전용 청원군수인	한글전서체 정방형 (2.0cm×2.0cm)		민원사무전용 청원군수인	한글전서체 정방형 (2.0cm×2.0cm)	

기 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24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의고시

도로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6년 2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인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 선 명	국도19호선
접도구역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점 : 충북 영동군 학산면 범화리 1768도 - 종점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4-1도 		
접도구역 지정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산-영동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교차로구간 등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피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 해제 또는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점 : 충북 영동군 학산면 범화리 1768도 - 종점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4-1도 		
접도구역 해제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도로 건설로 인하여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첨부서류: 지형도 1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6-11호

도로사용개시(폐지)에관한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인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 19호선(남해~원주)
3. 사용 개시구간 : 충북 영동군 학산면 범화리~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11.94km)
4. 사용 폐지구간 : 충북 영동군 학산면 범화리~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12.5km)
5. 중요 경 과 지 : -
6. 전 용 구 간 : 충북 영동군 학산면 범화리~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11.94km)
7. 중용구간 : -
8. 개시(폐지)일시 : 2006년 1월 25일
9. 비고 : 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전화 : 042-670-3524)에 비치되어 있음.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